

스포츠 반도핑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2005년 10월 19일
프랑스 파리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

스포츠 반도핑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Doping in Sport)

2005년 10월 3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이후로는 UNESCO로 칭함)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UNESCO의 목적이, 교육, 과학과 문화를 통해 국가간의 협력을 증진시켜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인권에 관련되는 기존의 국제적인 법적 장치들을 참조하여;

교육, 건강, 발달과 평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스포츠에 관하여 2003년 11월 3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58/5, 특히 제7항을 인지하여;

스포츠가,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덕 교육, 문화 교육 및 체육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의식하여;

스포츠에서 도핑을 추방하는데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여;

스포츠 참여자의 도핑 사용과 그로 야기되는 결과가, 참여자들의 건강, 페어플레이 원칙, 속임의 추방, 그리고 스포츠의 미래에 대해 의미하는 바를 우려하여;

UNESCO 스포츠 및 체육 현장과 올림픽 현장에 구현된 윤리적 원칙과 도덕적 가치를, 도핑이 위태롭게 한다는데 유념하여;

유럽평의회(CoE)의 틀 안에서 채택된 반도핑협약과 추가 프로토콜이 국제적인 공공

의 법적 장치들이며, 이들이 국가 반도핑 정책과 정부간 협력의 기원임을 상기하여;

UNESCO가 주최하여 1988년 모스크바와 1999년 폰타 델 에스테, 그리고 2004년 아테네에서 열린, 제2회와 제3회, 그리고 제4회 스포츠 및 체육 담당 장관 및 고위공직자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도핑에 관한 권고, 그리고 2003년 제32회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32 C/9을 상기하여;

2003년 3월 5일 코펜하겐에서 열린 스포츠 반도핑 세계총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의해 채택된 세계반도핑규약(WADC)과 스포츠 반도핑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을 명심하여;

엘리트 선수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유념하여;

도핑의 탐지를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도핑 예방 전략의 사용 효과를 극대화 하는 요인들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추진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있음을 인지하여;

도핑을 예방하는데 선수 및 선수 지원 인력, 그리고 사회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의 중요함 또한 인식하여;

각 국가가 반도핑 프로그램들을 이행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여;

공권력과 스포츠에 책임이 있는 조직들이, 스포츠에서 도핑과 투쟁하고 이를 예방하는데, 특히, 페어플레이의 원칙에 기초하여 스포츠 대회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상호 보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여;

이 공권력들과 조직들이,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최상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

하며 이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해야 함을 인식하여;

스포츠에서 도핑을 추방하기 위해 보다 더, 그리고 보다 강한 협력적 행동을 취할 것을 다짐하며;

스포츠에서 도핑을 추방하는 일의 성패가 부분적으로, 반도핑 기준들과 스포츠에서 그 실행들, 그리고 국내 수준과 세계 수준의 협력이 점진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2005년 10월 19일 이 협약을 채택한다.

제1부: 범위

제1조 -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체육 및 스포츠 영역에서의 UNESCO 활동 전략과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스포츠 도핑에 대한 예방과 투쟁 - 스포츠 도핑의 완전 추방을 기대하며 - 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조 - 정의

용어들의 정의들은, Code(WADC: 세계반도핑규약)의 문맥 내에서 이해된다. 그러나 상충이 있을 경우 협약의 조항들이 우선이 된다.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해서:

1. “Accredited doping control laboratories” 란 WADA에 의해 승인된 Lab을 말한다.
2. “Anti-Doping Organization” 이란 도핑 통제 과정의 어떤 부분을 시작하고, 이행하거나 집행하는 규칙을 채택한데 대한 책임이 있는 주체를 말한다.

[이하 일단 생략]

제3조 -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WADC의 원칙에 일치되는, 국가 수준 및 국제 수준에서의 적절한 수단을 채택함;
2. 선수와 스포츠 윤리를 보호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국제적 협력을 권장함;
3. 회원국들과 스포츠 반도핑 주도 조직, 특히, WADA와의 국제적 협력을 증진시킴.

제4조 - 본 협약과 Code와의 관계

1. 국가 수준 및 국제 수준에서, 스포츠 도핑에 대한 투쟁 이행을 조정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본 협약 제5조에 제시된 수단들의 기반으로, Code의 원칙에 충실한다. 이 협약의 어떤 부분도, 회원국들이 Code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수단을 채택하

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2. Code와 Appendices 2 및 3의 최신판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본 협약에 전제되며 본 협약에 포함되는 부분이 아니다. Appendices는 그 자체로서 회원국들에 대해 국제법상의 어떤 기속적 책임도 지우지 않는다.

3. Annexes는 본 협약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제5조 -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본 협약에 포함된 의무를 준수하는데 있어, 각 회원국은 적절한 수단을 채택할 책임을 진다. 그런 수단에는 legislation, regulation, policies 혹은 administrative practices 가 포함될 수 있다.

제6조 - 다른 국제적 장치들과의 관계

본 협약은, 본 협약에 앞서 이루어졌고 본 협약의 목적과 의도에 상치되지 않는 다른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본 협약에 의해 향유되는 다른 회원국들의 권리나 의무 수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부: 국가 수준의 반도핑 활동

제7조 - 국내 조정

회원국들은, 특히 국내의 조정을 통하여, 본 협약이 확실히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회원국들은, 본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스포츠 당국들과 스포츠 조직들은 물론, 반도핑 조직들에게도 의존할 수 있다.

제8조 - 스포츠에서 금지된 물질과 방법의 입수 및 사용 제한

1. 회원국들은,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 - 치료 사용 목적의 면제(TUE)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을 막기 위해, 적절한 국면에서, 이 금지 물질 및 방법의 입수를 막는 조치들을 채택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에는, 금지 물질 및 방법이 선수들에 유통되는 것을 막는 조치,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 이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며, 수입하고, 배포하며, 매매하는 것을 통제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2. 회원국들은,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사용 및 소유하는 것 - TUE에 해당되지 않으면 - 을 예방하고 저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자기 관할 하의 관련 주체들에 대해, 적절한 국면에서, 이를 장려하고 채택해야 한다.
3. 본 협약에 준수하여 채택된 어떤 조치도, 스포츠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금지되거나 통제될 그런 물질 및 방법을, 합법적인 목적으로 입수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9조 - 선수 지원 인력에 대한 조치

회원국들은, Code 하의 규칙 위반을 범하거나 스포츠 도핑에 관련된 다른 위반을 범한 선수 지원 인력을 겨누는 제재나 벌칙을 포함한 조치를, 스스로 채택하거나, 스포츠 조직들과 반도핑 조직들이 채택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10조 - 영양보조제

회원국들은, 영양보조제의 생산자와 배포자가, 영양보조제를 판매하고 배포하는데 있어, 분석요소에 관한 정보와 품질 보증을 포함하는 최상의 실행 과정을 수립하도록, 적절한 국면에서 독려해야 한다.

제11조 - 재정적 조치

회원국들은 다음을, 적절한 국면에서, 수행해야 한다:

- a. 자국의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스포츠에 걸쳐 자국의 검사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자금을 제공하든가, 스포츠 조직들과 반도핑 조직들이 도핑 통제에 자금 제공하는 것을 돕든지 해야 하는데, 이에선 직접 보조금(direct subsidies)이나 교부금(grants)에 의해, 혹은 그런 조직들에 총체적 보조금 또는 교부금(overall subsidies or grants)을 주기로 결정했을 때는 도핑 통제의 비용을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이를 수행해야 함;
- b.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자격 정지를 당한 선수와 선수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기간 동안 스포츠 관련의 재정 지원을 보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c. Code나 Code에 맞추어 채택된 적절한 반도핑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스포츠 조직이나 반도핑 조직으로부터 재정지원의 일부 혹은 모두나, 다른 스포츠 관련 지원을 보류함;

제12조 - 도핑컨트롤을 촉진하는 조치

회원국들은 다음을, 적절한 국면에서, 수행해야 한다:

- a. 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스포츠 조직들과 반도핑 조직들이, 예고 없는 경기외검사(OOCT) 및 경기내검사를 포함하여, Code에 일치되는 방법으로 도핑컨트롤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촉구하여야 함;
- b. 다른 나라의, 정식으로 권한 위임받은 도핑컨트롤팀이 자국 멤버를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스포츠조직들 및 반도핑 조직들 간의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장려하고 촉구함;
- c. 자국 관할 하의 스포츠 조직들과 반도핑 조직들이, 도핑컨트롤 분석을 위해, 공인 Lab을 이용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 의무를 짐;

제3부: 국제 협력

제13조 - 반도핑 조직들과 스포츠 조직들의 협력

회원국들은, 자국 관할 하의 반도핑 조직들, 공권력들, 스포츠 조직들과, 다른 회원국들 관할 하의 그것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제14조 - WADA의 임무에 대한 지지

회원국들은, 도핑에 대한 국제적 투쟁에 있어 WADA의 중요한 임무에 대해 이를 지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 WADA에 대한 재정적 공평 분담 (equal-funding)

회원국들은, 공권력들 측과 올림픽 무브먼트 측이 승인된 WADA의 연 핵심 예산에 대해 재정적 공평 분담하는 원칙을 지지한다.

제16조 - 도핑컨트롤에서의 국제 협력

선수들에 대해 예고 없이 검사가 수행될 수 있고, 샘플들이 적시에 분석 Lab에 운반될 수 있어야만 스포츠 도핑에 대한 투쟁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회원국들은, 적절한 국면에서, 자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을 행하여야 한다:

- a. 해당국내에서건 다른 곳에서건, 관련 해당국의 규칙에 따라, 경기내 및 경기외 도핑 통제를 수행하는, Code를 준수하여 움직이는 WADA 및 반도핑 조직의 업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해야 함;
- b. 정식으로 권한 위임받은 도핑 통제 팀이 도핑 통제 활동을 수행할 때, 팀의 適時 국경 이동을 용이하도록 해야 함;
- c. 샘플의 안전과 원래 상태가 유지되도록, 국경을 넘는 샘플의 적시 운반을 촉진하는데 협력을 해야 함;
- d. 여러 반도핑 조직들에 의한 도핑 통제의 국제적 조정,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WADA와 협력하는데 협조해야 함;
- e. 자국 관할 하의 도핑 통제 Lab들과 다른 나라 관할의 Lab들 사이의 협력을 증진해야 함; 특히 승인을 받은 Lab들을 갖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기가 원할 경우, 자체의 Lab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경험, 기술 및 기능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자국 관할 하의 승인 Lab들에 장려를 해야 함;
- f. Code에 따라, 지정된 반도핑 조직들 간의 상호 검사 조정을 장려하고 지원함;
- g. Code를 준수한, 어떠한 반도핑 조직의 도핑 통제 절차와 검사 결과 관리 - 그

에 따른 스포츠 제재를 포함하여 - 도 상호 인정해야 함;

제17조 - Voluntary Fund(자발적인 기금)

1. 소위 “Fund for the Elimination of Doping in Sport (스포츠 도핑 추방 기금)”이 이에 의해 설립되며, 차후 이것을 “the Voluntary Fund (자발적 기금)”이라 한다. Voluntary Fund는, UNESCO의 재정 규정을 준수하여 설립된 위탁 기금 (funds-in-trust)으로 구성된다. 회원국들과 다른 부문의 모든 기부금은 자발적인 것이다.

2. Voluntary Fund의 재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 된다:

a. 회원국들이 낸 기부금

b.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낼 수 있는 기부금, 선물 혹은 유산:

i. 다른 국가들;

ii. UN 체제의 조직들 및 프로그램들, 특히 다른 국제 조직은 물론,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혹은

iii. 공공 및 사설 집단 혹은 개인들

c. Voluntary Fund 재원에 대한 모든 이자

d. 모금을 통한 기금 증진, 그리고 Voluntary Fund 증진을 위해 조직된 이벤트로부터의 영수금

e. Voluntary Fund 규정으로 공인된 모든 다른 재원으로 Conference of Parties(당사자 총회)에 의해 입안될 것임

3. 회원국들이 Voluntary Fund에 기부한 금액은, 각국의 WADA 연 예산 분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18조 - Voluntary Fund의 사용과 지배

Voluntary Fund의 재원은 Conference of Parties에 의해 배당이 되며, Conference of Parties가 승인한 활동, 특히 회원국들이, WADA의 목적을 고려한, 본 협약의 조항에 일치하는 반도핑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을 하는데 사용된다. Voluntary Fund에의 기부금에는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혹은 다른 조건을 첨부할 수 없다.

제4부; 교육 및 훈련

제19조 - 교육 및 훈련의 일반 원칙

1. 회원국들은 자기의 가능한 수단 내에서 반도핑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고안하거나 이행하는 의무를 진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인 스포츠 커뮤니티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a. 스포츠의 윤리적 가치에 도핑이 주는 해악;

b. 도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2. 선수와 선수 지원 인력에 대해, 특히 그들의 초기 훈련에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들은, 위의 내용들에 더해, 다음과 같은 것에 관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a. 도핑 통제 과정;

b. Code와 관련 스포츠 조직들 및 반도핑 조직들의 반도핑 정책에 대한 정보

를 포함하여, 반도핑에 관한 선수의 권리와 책임. 그런 정보에는 반도핑 규칙 위반을 범했을 때의 결과가 포함됨;

c. 금지 물질 과 방법의 목록 및 치료 목적 사용의 면제(TUE);

d. 영양 보조제

제20조 - 프로의 행동 규약

회원국들은 관련의 능력을 갖춘 프로 협회와 기관들이, Code 내용과 상치되지 않는, 스포츠 반도핑 관련의 적절한 행동 규약, 실행 규약 및 윤리 규약을 개발하고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21조 - 선수와 선수 지원 인력의 참여

회원국들은, 스포츠 및 다른 관련 조직의 반도핑 업무의 모든 국면에, 선수와 선수 지원 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자기의 가능한 수단 내에서 이를 지원해야 하며, 자기 관할 하의 스포츠 조직들이 마찬가지로 행위를 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22조 - 스포츠 조직들과 지속적인 반도핑 교육 및 훈련

회원국들은, 스포츠 조직들과 반도핑 조직들이, 모든 선수들과 선수 지원 인력들에게 위 제19조에 밝힌 주제들에 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23조 -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의 협력

회원국들은 상호 간에 그리고 다른 관련 조직과도, 효과적인 반도핑 프로그램들에 관한 정보와 전문적 기술, 경험을, 적절한 국면에서, 공유하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부: 연구

제24조 - 반도핑 연구 촉진

회원국들은 자국의 가능한 수단 내에서 스포츠 및 다른 관련 조직과 협력하여 반도핑 연구를 장려하고 촉진할 의무를 지는데, 그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 도핑의 예방, 도핑 탐지 방법, 도핑의 행동적 사회적 측면, 도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b.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과학에 기초한, 생리적, 심리적 훈련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방법 및 수단; 그리고
- c. 과학 발전에 따라 새로 부상하는 모든 방법들의 사용.

제25조 - 반도핑 연구의 특성

반도핑 연구를 촉진할 때, 위 제24조에 언급한 바처럼, 회원국들은 그 연구가 반드시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a. 국제적으로 인정된 윤리적 관례에 따라야 함;
- b. 선수들에게 금지된 물질이나 방법을 시행하지 않아야 함;
- c. 반도핑 연구 결과가 오용되거나 도핑에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예방 조치가 확립된 후에만 착수함.

제26조 - 반도핑 연구 결과의 공유

해당 국가 및 국제 법을 준수하여, 회원국들은, 적절한 국면에서, 가치가 있는 반도핑 연구의 결과를 다른 국가들 및 WADA와 공유해야 한다.

제27조 - 스포츠 과학 연구

회원국들은 다음을 장려해야 한다;

- a. 과학 및 의학계의 인사가 Code의 원칙에 따르는 스포츠 과학 연구를 수행함;
- b. 자국 관할 하에 있는 스포츠 조직들과 선수 지원 인력이 Code의 원칙에 맞는 스포츠 과학 연구를 이행함.

제6부: 협약의 감시

제28조 - Conference of Parties(당사자 총회)

1. Conference of Parties가 이에 설립된다. Conference of Parties는 본 협약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2. Conference of Parties의 정례회기는 원칙적으로 매 2년 마다 소집된다. Conference of Parties가 그렇게 결정하거나, 회원국들의 최소 3분의 1의 요청하면 임시회기가 소집될 수 있다.
3. 각 회원국은 Conference of Parties에서 한 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4. Conference of Parties는 자체의 절차 규정(Rules of Procedure)을 채택한다.

제29조 - Conference of Parties의 자문 조직 및 옵서버

1. WADA는 Conference of Parties의 자문 조직으로서 초청된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PC(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CoE(유럽평의회), CIGEPS(체육 및 스포츠 정부간 위원회)는 옵서버로서 초청된다. Conference of Parties는 다른 관련 조직을 옵서버로 초청할 수 있다.

제30조 - Conference of Parties의 기능

1. 본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설명된 바에 더하여, Conference of Parties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a. 본 협약의 목적을 추구함;

b. WADA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WADA의 주 예산에 대한 자금제공 메카니즘을 숙고함. 회원국 아닌 국가를 논의에 초청할 수 있음;

c. 제18조에 따라 [Voluntary Fund]의 재원에 대한 사용 계획을 채택함;

d. 제31조에 따라 회원국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사함;

e. 반도핑 체제의 개발에 대응하여, 본 협약 준수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심사함. [이에 대한 자금은, 위 제17조에 의거, 설립되는 Voluntary Fund에서 제공될 것임], [이에 대한 자금은 UNESCO 정규 예산에서 제공될 것임];

f. 본 협약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지 심사함;

g. 본 협약 제34조에 맞추어, WADA가 채택한, 금지약물목록(Prohibited List) 및 TUE 부여 기준(Standards for Granting Therapeutic Use Exemptions)에 대한 수정안을, 승인할 것인지 심사함;

h. 본 협약의 틀 안에서 회원국들과 WADA의 협력을 규명하고 이행함; 그리고

i. 각 심사 회기 마다, Code 이행에 관한 WADA의 보고서를 요청함.

협약의 준수를 평가할 비용 효율이 높은 메카니즘 - 특히 평가를 위한 방문을 포함 - 을 규명함;

2. Conference of Parties는 자기 기능을 다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간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31조 - Conference of Parties에 대한 국가의 보고

회원국들은 매2년 마다 Conference of Parties에 사무국 통하여, 본 협약의 조문 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자국이 취했던 조치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UNESCO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제출해야 한다.

제32조 - Conference of Parties의 사무국

[1. Conference of Parties의 사무국은 UNESCO 사무총장이 마련한다.]

2. Conference of Parties의 요청에 의해, UNESCO 사무총장은 WADA의 서비스를, Conference of Parties가 동의한 조건에 따라 최대한 이용한다.

[3. 사무국과 Conference of Parties의 운영 자금은, [UNESCO의 정규 예산] [그리고/혹은] [위 제17조에 의거 설립된 Voluntary Fund](으)로부터 제공을 받게 된다.]

4. 사무국은 Conference of Parties 회의 안건 초안은 물론, Conference of Parties의 서류를 준비하며, Conference of Parties의 결정 내용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한다.

제33조 - 협약의 수정

1. 각국은, UNESCO 사무총장 앞으로 서면을 통해, 본 협약의 수정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그런 서신을 모든 회원국에게 회람시켜야 한다. 만약, 서신 회람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들의 최소 2분의 1이 동의를 하면, 사무총장은 그 제안을 Conference of Parties의 다음 회기에 상정한다.

2. 수정안은, 참석하여 투표에 참가한 회원국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Conference of Parties에 의해 채택된다.

3. 일단 채택되면, 본 협약 수정안은, 회원국들의 비준(ratification), 수용(acceptance), 승인(approval) 혹은 수락(accession)을 얻기 위해 제출된다.

4.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을 완료한 회원국들에게는, 회

원국들의 3분의 2가, 본 조 3항 관련의 서류를 기탁(deposit)한 후 3개월 이후에 본 협약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된다. 그 후, 수정에 대한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을 완료하는 각 회원국에게는, 그 회원국이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의 서류를 기탁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그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된다.

5. 본 조 4항에 따라 수정안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본 협약에 회원이 되는 국가는, 다른 의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a. 그렇게 수정된 본 협약에의 회원임;

b. 수정에 의해 기속되지 않은 회원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정 안 된 협약에의 회원임.

제34조 - 본 협약 Annexes의 특수 수정 과정

1. WADA가 금지목록이나 TUE 부여 기준을 수정하면, WADA는 UNESCO 사무총장 앞으로 서면을 통해 이 변경을 알릴 수 있다.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관련 Annexes에 대한 수정으로 제안된 그런 변화들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Annexes에 대한 수정안은, 그 회기나 서면 상담을 통해, Conference of Parties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사무총장이 통지한 후 45일 이내에, 서면 상담의 경우는 서면으로 사무총장 앞으로, 또는 Conference of Parties 회기에서 수정 제안에 대한 반대를 포함 수 있다. 회원국들의 2/3가 반대를 표하지 않으면 그 수정 제안은 Conference of Parties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 Conference of Parties에 의해 승인된 수정은 사무총장이 이를 회원국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수정은 통지 45일 후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사전에 사무총장에게 자기 나라는 이 수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모든 회원국은 여기서 제외가 된다.

4. 이전 항들에 따라 승인된 수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 완료

한 국가는, 수정되지 않은 Annexes에 기속되는 상태로 남는다.

제7부: 마지막 조항들

제35조 - 연방 혹은 非-단일 헌법 체제들

다음의 조항은, 연방이나, 하나가 아닌 헌법 체제를 가진 회원국들에게 적용이 된다:

- a. 그의 이행이 연방 혹은 중앙 입법 권력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본 협약의 조문에 관해서는, 연방 혹은 중앙 정부의 의무들은 연방 국가가 아닌 회원국들의 의무들과 동일하다.
- b. 그의 이행이, 법적 수단을 취하는데 연방의 헌법 체제에 구애를 받지 않는, 개개의 헌법 States, countries, provinces 혹은 cantons의 법적 관할 하에 있는 본 협약의 조문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가 그런 States, countries, provinces 혹은 cantons에게 그런 조문들을 통지해야 하고, 그것들의 채택을 권고해야 한다.

제36조 -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본 협약은 UNESCO 회원국들에게 자기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을 받아야 한다.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의 서류는 UNESCO 사무총장에게 기탁해야 한다.

제37조 - 효력 발생

1. 본 협약은,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한 30번째 서류가 기탁된 이후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달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 이어서 협약에 기속되는데 동의를 표명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본 협약은,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한 서류가 기탁된 이후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달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제38조 - 본 협약의 영토 영역 확대(Territorial extension of the Convention)

1. 어떠한 국가도,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한 서류를 기탁할 때, 본 협약이 적용되는 영토(州) 혹은 영토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
2. 어떠한 국가도, 얼마 후가 될지라도, UNESCO에 행하는 선언에 의해, 본 협약을, 선언에서 밝힌 어떤 다른 영토에도 확장 적용시킬 수 있다. 그런 영토에 대해서 본 협약은, 기탁자의 그런 선언이 접수된 날짜 이후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달의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앞의 두 항목 하에 행해진 모든 선언은, 그 선언에 언급된 모든 영토에 대해서, UNESCO 앞으로 통지를 함으로써 취소될 수 있다. 그런 취소는, 기탁자의 그런 통지를 접수한 날짜 이후 1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음달의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39조 - 실효 통고(Denunciation)

각 회원국은 본 협약의 실효 통고를 할 수 있다. 실효 통고는 서면에 의해 통지되어야 하고, UNESCO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실효 통고는, 실효 통고의 서

류가 접수된 후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다음달 제1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탈퇴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는 그 실효 통고가 해당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40조 - 수탁자(Depository)

UNESCO 사무총장이 본 협약과 그 수정에 대해서도 수탁자가 된다. 수탁자로서 UNESCO 사무총장은, UNESCO의 다른 회원국들은 물론 본 협약의 회원국들에게도 다음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 a. 모든 승인(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accession) 서류의 기탁;
- b. 제37조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발생 일자;
- c. 위 제37조 조문에 따라 준비되는 모든 보고;
- d. 위 제33 및 34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협약 및 Annexes 수정, 그리고 그 수정이 유효하게 되는 날짜;
- e. 위 제38조 조문 下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언;
- f. 위 제39조 조문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통지 및 그 탈퇴가 유효하게 되는 날짜;
- g. 본 협약에 관련되는 모든 다른 의사록(act), 통지 혹은 발표

제41조 - 등록

UN 헌장 제102조에 따라, 본 협약은 UNESCO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UN 사무국에 등록된다.

제42조 - 유권적 원문(Authoritative texts)

1. Annexes를 포함하여 본 협약은,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었는데, 이 6개 원문이 동등하게 권위를 갖는다.
2. 본 협약의 Appendices는 아라비아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다.

제43조 - 유보(Reservations)

당시 협약의 목적과 의도와 상반되는 어떠한 유보도 허락되지 않는다.

파리에서, 200..년 이.....날에, 제...회기에서 UNESCO 총회 의장 및 사무총장의 서명을 지닌 2개의 권위본으로 완성되었으며, UNESCO의 공적 기록 보관소에 기탁되었다.

Annexes

1. 금지 목록 - 국제 기준 (The Prohibited List - International Standards)
2. 치료목적 사용의 면제(TUE) 부여에 관한 기준 (Standards for Granting Therapeutic Use Exemptions)

Appendices

1. WADC
2. Lab에 관한 국제 기준 (International Standard for Laboratories)
3. 검사에 관한 국제 기준 (International Standard for Testing)